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박진희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5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1일

3. 제안이유

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시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 시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4조 및 제5조)

나.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 시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실태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6조)

다.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·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6조의2)

5. 검토내용

○ 안 제4조는 3의2호를 신설하여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시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와 방호울타리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면서, 특히 보도의 경우 국토교통부 예규인 「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」에 따른 보도 유효폭 확보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,

제4항을 신설하여 계획 수립 시 충청북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,

- 최근 충북 초등학교 인접도로에 보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60.9%에 달한다는 언론보도[뉴스1, “충북 초등학교 인접도로 보도 설치율 전국 꼴지서 세번째” (23.10.20.)]가 있었던 반면, 충북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,

- 방호울타리는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고, 보행자가 길 밖으로 추락하거나 횡단을 금지하는 시설로,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를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를 직접 이용하는 어린이, 행정안전부 등 4개부 공동부령인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초등학교등의 관계자, 그리고 충청북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안 제5조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어린이

- 통학로 개선 시행계획에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,
- 안 제4조의 검토내용과 같은 근거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6조는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내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여부, 보도 및 방호울타리가 ‘완비’되지 않은 때에는 설치 비율을 개소별로 파악하려는 것으로,
- 실태조사 시 설치 또는 미설치 여부만 파악할 경우,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보도·방호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된 경우에도 ‘설치’된 파악하는 관리상 허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6조의2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 또는 실시한 경우 그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,
-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감시와 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조례안 예고(`24. 5. 31 ~ 6. 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시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, 기본계획 수립 시 충북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, 동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수립

또는 종료한 경우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위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어린이 통학로 개선 실태조사 시 충청북도 내 시·군의 협조가 필수적이고,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에도 충청북도 및 시·군 도로관리부서, 충청북도교육청, 충청북도경찰청 및 경찰서장, 유치원·초등학교·어린이집 등 시설의 관계자를 비롯하여 관련 민간 단체,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집행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